

『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(안 제3조)
- 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, 업무(안 제4조~제5조)
- 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6조~제7조)
- 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(안 제9조)
- 수당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(안 제11조)
- 운영세칙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, 「공직선거법」 제191조,
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
(예상 비용이 연 1억 원 미만으로 추정)
- 기 타 : 감사담당관, 총무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법」에서 위임된 인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·인력·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